

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470호

「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6일

산업통상부장관

「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통상부에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호, 2026. 7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

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
- 전자우편 : minscho@korea.kr
- 팩스 : (044) 203-4799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(전화 (044) 203-5539, 팩스 (044) 203-479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